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2호 2022. 8. 1.(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2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3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6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6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6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50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52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85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정보공개 강화
 -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연수구청 홈페이지 및 신청 단지에 공개
 - 심의·결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 확대 등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 확대 (13명 이내 ⇒ 16명 이내)
 -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공무원 위원 위축을 1/4로 제한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자선정 기준 마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구체적 규정화
 -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 신설
- 용어 순화
 - 중복 용어 및 한자어 등 순화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우편·방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도시주택과)
팩스) 032-749-8609
이메일) ley5426@korea.kr

- 문 의 : 032-749-8622

4. 참고자료

가. 개정 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8.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9.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표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을 “대표자는”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지원방법)” 을 “(지원 결정 및 공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신청” 을 “지원신청서” 로, “현장조사” 를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13명” 을 “1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 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의 적용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공사의 준공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별표 1]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제4조의2제1항 관련)

1.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산업기사 이상)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구분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항목	①급배수 ②전기 ③가스 ④승강기 ⑤통신 ⑥도장 ⑦위생 ⑧방수 ⑨조경 ⑩ 기타	①청소 ②경비 ③기타
대상	(의무자문) 2억원 이상 (선택자문)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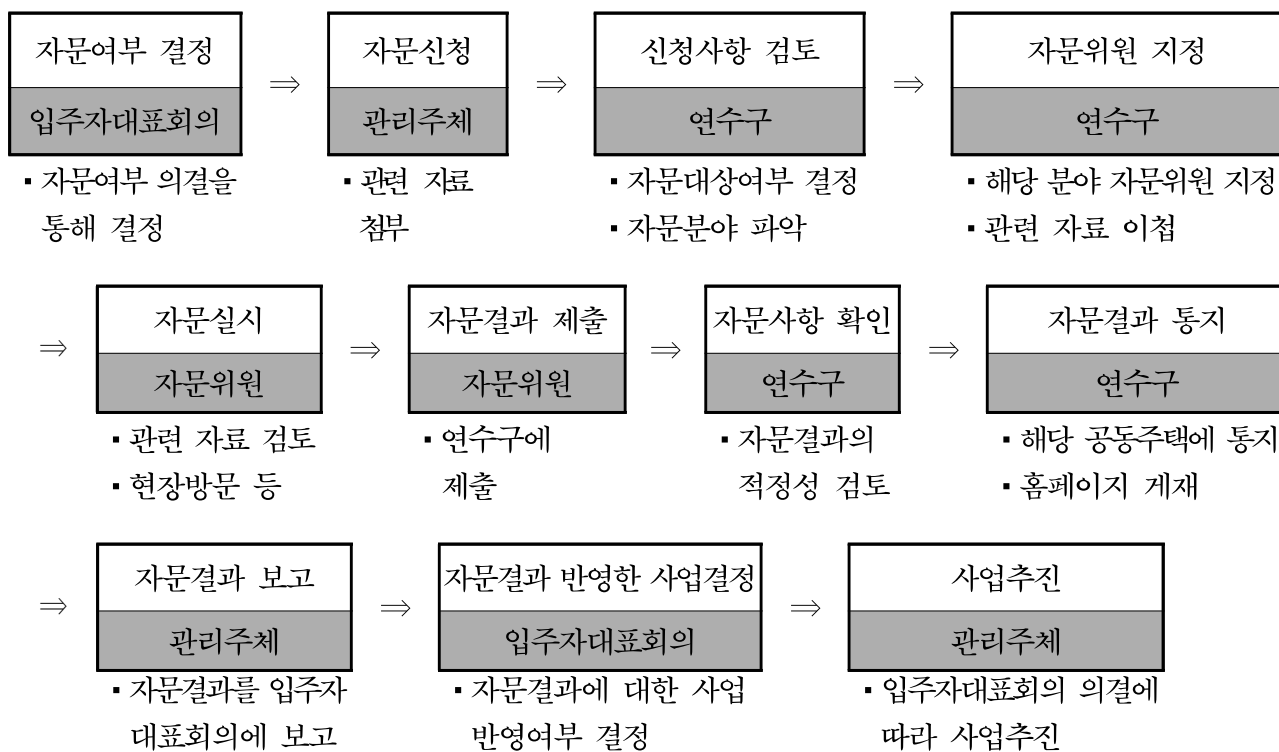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연수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 (생략)	제2조의2 (현행과 같음)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삭제 2013.9.30.>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다.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현행	개정안
<u>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u> <u>바.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u> <u>사.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u> <u>아.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 등 전기료</u> <u>자.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u>차.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u> <u>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u> <u>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u> <u>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u>	<u>공사</u> <u>8.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u> <u>9. 공동주택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u> <u>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u> <u>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관리인)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생략)	제4조의3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제5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제4조에 따른 -----

현행	개정안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u>대표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은</u>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7조(<u>지원방법</u>)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u>의하여</u>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경우 <u>현장조사</u>를 실시한 후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u><신설></u>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등) ① ----- ----- ----- ----- <u>대표자는</u>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u>지원 결정 및 공개 등</u>) ① ----- <u>따라</u> ----- ----- <u>신청서를</u> ----- <u>현장조사</u> <u>및 서면심사</u>----- <u>제8조</u> <u>에 따른</u> ----- -----. ② <u>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3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부구청장</u>, 부위원장은 <u>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u>이 된다. ④ 위원은 <u>출산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u>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6명</u> ----- -----. ③ ----- <u>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u>,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u> 2.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u> 3. <u>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u> 4. <u>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법 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u>

현행	개정안
⑤ (생략) ⑥ <u>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⑦ ~ ⑧ (생략) ⑨ 위원회의 위원이 <u>당해</u>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u>당해</u>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⑩ (생략)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지원예산의 운용에 <u>관한사항</u> 4. (생략) <u><신설></u>	<u>차공무원</u> 5.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 <u>해당</u> ----- ----- <u>해당</u> ----- ----- -----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u>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점검)</u> ① <u>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대상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u> ② <u>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u>

현행	개정안
	<u>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u> <u>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08.1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여성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여성아동과)
- 연 락 처 : 전화(032-749-6743), 팩스(032-749-673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 스스로”를 “아동 스스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시행령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 ----- 시행령 제36조제6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아동 스스로 ----- -----.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 3. (생략)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 시행령 제36조제2항----- ----- ----- ----- -----. 1. ~ 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신설(안 제35조, 제36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7조, 제28조제2항)
-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정비(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21조, 제24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등)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제명,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재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63, FAX : 032-749-7349
- E- mail : shbailove@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 출납보관”을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및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1일에 종료한다”를 “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물품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관 과장”을 “각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 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각 부서의 장”으로, “물품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매입토록하여야”를 “매입토록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결정 하였을”을 “결정하였을”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 다만”을 “금액.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등재후”를 “등재 후”로, “물품의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연수”를 “그 밖에 내구연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8조 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을 “따른 장부”로,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 놓을 수 있다.

제25조 중 “매 년”을 “매년”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 중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을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를 실시한다.

제2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따른”을 “따라”로, “물품출납”을 “물품출납원”으로,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을 “교체”로, “발령일로부터”를 “발령일부터”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계전일”을 “인계 전일”로, “연월일”을 “연월일을”로, “인계인수”를 “인계·인수”로 한다.

제33조 제목 “(타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로,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처리하계”를 “처리하도록”으로 한다.

제3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u>기타 출</u>	<u>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인천광역시</u> ----- ----- <u>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u> -----.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u>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u>)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 -----, -----, <u>그 밖의</u>

출납 또는 보관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
-----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
조-----

제5조(물품의 분류)
 _____,
 _____ 따른
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

31일까지로 한다.

② -----

---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각 부서(동 행정복지센
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
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
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
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 관
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
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
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
입) ① (생 략)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
호, 수량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

이하 같다)의 장-----

--. <단서 삭제>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의 장-----
----- 물품관리
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

매입토록 하여야 ----.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
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칙으로

-----.

③ -----
-----,
--, -----, -----

규칙으로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②

규칙으로

제 1 2 조 (분 류 전 환)

-- 결정하였을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제작용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용품을 가산한 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제14조(물품의 가격) -----
-----.

1. (현행과 같음)
2. -----
----- 금액. 다만, -----

3. ~ 6. (현행과 같음)
7. -----

----- 등재 후 -----

----- 물품관리관 -----

제15조(잔품의 이월) -----
----- 물품에 대하여는 -----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 -----, 그 밖의 -----
----- 규칙 -----
----- 으로 -----

-----, -----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 4. (생 략)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
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 4. (생 략)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⑤ ~ ⑧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
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은 지

-----.

② (현행과 같음)

1. ----- 긴급하게 처
분할 필요가 있는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내구연수-----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 -----

3. ~ 4. (현행과 같음)

④ -----
----- 영 제78조제4항--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 각 호-----
----- 규칙으로 -----

-----.

② ----- 따른 -----

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

--, -----, 동장
----- 또는 그 밖
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규칙으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 따른 장부-----

----- 갖춰 놓
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작성) -----
----- 매년 -----
-----.
-----,

-----.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신 설>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를 실시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규칙으로
----- 따라 -----
----- 물
품출납원 -----

-----, 보건소장,-----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교체-----
----- 발령일부터-----

-----.

제32조(인계의 절차) -----
----- 인계 전일

---- 연월일을 ----- 인계·인
수-----.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
 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
 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
 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조 (생 략)

----- 사망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

 -----, -----, 동장-----
 ----- 사람
에게 -----
 --- 처리하도록 -----.

제5장 보칙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
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
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
계층으로 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
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
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
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연수구청사 및 의회청사·별관 시설물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청사시설물을 정비하고,
- 청사시설물 사용료 반환절차 준용규정 및 대관심의회 규정 등을 개정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수구청사 및 의회청사·별관 청사시설물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제2항, [별표])
- 사용료 반환절차 준용규정 및 대관심의회 규정 등 정비(안 제10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 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재무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63, FAX : 032-749-7349
- E- mail : shbailove@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본 조례에서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내시설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를 “제1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을 “대회의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연, 발표회, 교육 등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7. 소회의시설 : 바다홀(별관)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라”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되지”를 “반환하지”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없게된”을 각각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일전”을 “4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3(중전 제17조) 제목 “(타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및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중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1. 대 관 료

시설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연수아트홀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09:00 ~ 21:00	80,000원	1시간	• 공연 연습 등을 위한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 18:00 이후 20% 가산
대회의실	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	09:00 ~ 18:00	50,000원	1시간	• 사전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송죽원	전 시	연중 (09:00 ~ 18:00)	무료		• 문화예술품 전시에 한함.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제외

※ 냉·난방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2. 부대시설 등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피아노	공연용 반주용	시설사용기간	10,000원	1회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냉,난방비	냉난방	시설사용기간	연료시가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전기료	동력, 전등, 전열	시설사용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적용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3.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헬 스 장	시설이용	07:00 ~ 21:00	무료	
북 카 페	시설이용	09:00 ~ 18:00	무료	

4. 교육 수강료

과 정 별	수강시간	수강료	기준	비고
평생학습 교양강좌	교양강좌 운영 공고안에 따름	좌 동 (과정별 상이)	좌 동	· 재료비(교재 등)는 본인부담
컴퓨터교육	1주 2시간	무료	2개월	
생활체육교실	07:00 ~ 20:00	10,000원	1개월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u>한다. 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본 조례에서 제외한다.</u>	제1조(목적) ----- ----- ----- ----- -----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u>구내시설물</u>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란 <u>제1조</u> 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1.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 ----- 2. -----제1호----- ----- ----- ----- 3. ~ 5.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청사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1. 공연, 발표회, 예식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2. 회의시설 :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
 3. 교육시설 : 어학실, 배움실, 평생학습강의실, 북카페 및 그 부속물
 4. 전시시설 등 : 전시실, 송죽원
 5. ~ 6. (생략)
- <신설>

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3(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 -----

 -----.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

 -----.
 ----, -----, ----
 ---, -----.

1. 공연, 발표회, 교육 등 : ----

2. 회의시설 : 대회의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
 (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5. ~ 6. (현행과 같음)
7. 사회의시설 : 바다홀(별관)

② -----

각 호와 같다.

1. 어학실

2. 배움실

3. · 4. (생 략)

5. 평생학습강의실

③ (생 략)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생 략)

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식장 사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이 접수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구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1. 배움실(별관)

<삭 제>

2. · 3. (현행 제3호 및 4호와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

----- 사람-----

-----.

② ~ ④ (생 략)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
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개
방시간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
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
-----사
용시간-----.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반환하지-----

-----.

1. -----
----- 없게 된

2. -----
----- 없게 된

3. -----
----- 4일 전-----

4. -----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5. (생 략)

② (생 략)

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제44조를 준용
한다.

제11조(대관심의회) ① 시설물 사
용 신청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
하여 대관심의회를 구성운영하
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
한다.

②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
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
지시킬 수 있다.

1. 동 조례 및 허가조건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3일 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 호의 어

는 하나에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
건을 위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의 -----

4. <u>기타</u>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u>호</u>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기타</u>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u>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u> <u>제18조(규칙)</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u>그 밖에</u> -----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 ----- ----- <u>호</u>의 어느 하나에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 <제2조의3으로 이동> <u>제17조(규칙)</u> ----- <u>필요</u>-----.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조례 반영 및 미비한 규정 보완
(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6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제62조의3)
-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 등 삭제
(안 제3조의6, 안 제4조, 안 제34조, 안 제6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 3, 안 제3조의5,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4조, 안 제45조, 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제50조, 안 제52조, 안 제54조, 안 제63조, 안 제6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재무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 ·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 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62, FAX : 032-749-7349
- E- mail : queenysj@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든”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을 “민간위원인”으로, “호선으로 선정”을 “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은 연수구청”을 “위원회의 위원은 구”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로 하고, 종전 제3조의5를 제4조로 하며, 종전 제3조의6을 삭제한다.

종전 제4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4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 제3조의2)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조의4(종전 제3조의3)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인”으로, “직무”를 “그 직

무”로 한다.

제4조(중전 제3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실태조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를 “예산 의결 전에 구의회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

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산을관리”를 “재산의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 수탁”을 각각 “관리수탁”으로,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연수”를 “연수”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을 “그 밖의 사용”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6조 제3호 중 “설립승인”을 “설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구”를 “구”로,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과 후단 중 “사용·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당해 지역내”를 “그 지역 내”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참고”를 “참고”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식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각각 “산식 : 해당”, “대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

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제1호 부터”를 “제26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7조제6항”을 “영 제17조제6항제1호”로,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를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을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으로, “제25호”를 “제25호, 제26호”로, “대부료 등”을 “영 제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을 “세입·세출”으로,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예금중도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으며,이”를 “같으며, 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 제23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다음의 “제3절 신탁”을 삭제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4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토괴”를 “붕괴”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참작”을 “고려”로, “『건축법』 상의”를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원화된”을 “공원화 된”으로 한다.

제47조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정의)”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을 “장에서 “관사”란”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관사 및 이에 준하는”을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을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로 한다.

제52조제4호 중 “제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제1항 중 “그 보상”을 “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10상당액으로 한다”를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으로, “5상당액으로 한다”를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인 경우에”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중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모든</u>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 <u>필요</u> -----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u>구성한다</u>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 ----- ----- -- <u>둔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은 연수구청 소속</u>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④ <u>위원회의 위원은 구</u> ----- ----- ----- -----, -----

한다.

1. ~ 3. (생 략)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
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
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
행한다.

제3조의4 (생 략)

제3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
-----, -----
-----, 민간위원인-----
----- 호선-----.

제3조의3(위원의 임기 등)
-----,
한 차제만 연임-----,

-----.
-----,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 제3조의3제1항과 같음)
② -----

공무원인 ----- 그 직무--
-----.

제3조의5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제4조(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3. (생략)

제3조의6(실비보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1. ~ 2. (생략)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특별시

-----.

1.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
2. ~ 3. (현행 제3조의5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삭 제>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 제4조제1항과 같음)

1. ~ 2. (현행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5. (현행 제4조제1항제5호와 같음)

② -----

----- 심의 -----
-----.

1. ~ 2. (현행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같음)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

· 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가격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
③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사람-----

5. (생 략)

④ (생 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별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
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
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
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생 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
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
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별
제10조의2 -----

----- 연수구의회(이하 “구의
회”라 한다)-----

----- 예산 의결 전에 구의회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
칙으로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공유재산 관리계
획 ----- 서

다.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사용-----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해당-----

----- 허가 시-----

② -----

----- 사용-----

-----.

제19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

--

6. <u>사용·수익</u>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u>사용</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u>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u>) 영 제 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 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9조의2(<u>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 가할 수 있는 경우</u>) ----- ----- ----- -----.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 하여 <u>사용·수익</u> 을 허가하는 경우	1. ----- -- <u>사용</u> ----- --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 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u>사용·수익</u> 을 허가하 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 ----- ---- <u>사용</u> ----- ----- --
제20조(<u>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u>)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의 <u>사용·수익</u> 허가부를 비치하 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제20조(<u>사용 허가부의 비치</u>) ---- ----- -- <u>사용</u> -----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u>행정재산을관리</u> 위탁받은 자(이 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	② ----- ---- <u>재산의 관리</u> 를 ----- -----

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 관
리수탁----- 사용-----

-----,
----- 관리수탁-----

----- 관리수탁-----
----- 관리
수탁-----.

④ -----

----- 관리수탁-----

-----.

⑤ -----

----- 해당 -----

-----.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
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
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
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
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

⑥ ----- 제4항까지의 규
정에도 -----연수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 그 밖의 사용

-----.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
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
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설

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 6. (생략)

제26조의2(전통시장 상점가에 사
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
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
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수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
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
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
·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
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
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
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립 승인된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조-----

5.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구 -----
사용-----

-----.

② ----- 사용-----
----- 사용

----- 사용-----
-----.

③ ----- 사용-----

사용-----
----- 사용-----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
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
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
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
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1. ~ 5. (생략)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
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
장을 신축하는 때

-----.

사용-----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3

0명 이상-----

----- 그 지역 내

7. ~ 9. (생략)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
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
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
로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
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
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
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
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
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

7. ~ 9.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
인등-----, -----
-----, 그 밖에 -----
참고-----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text{사용} \cdot \text{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text{사용} \cdot \text{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 \cdot \text{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 「건축법」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산식
 : 해당-----
대부 -----

2. ----- 산식
 : 해당-----
대부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사용-----
 -----이
하 -----
 -----.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다. 1일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 바. (생 략)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마. (생 략)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 각 목 -----
----- 대부료등-----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1일 평균 -----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 ---- 각 목 -----
----- 대부료등-----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
----- 대부료등-----
-----.

가. (생략)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의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략)

1. (생략)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평균 -----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사. 제26조제1호부터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 -----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

----- 사용-----
-----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대부료등-----
-----.

④ -----

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대부료등-----
-----.

⑤ -----,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

--, -----, 제25호, 제26호-----
-----, 영 제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

가 및 대부) ① -----

----- 사용-----,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세입·세출-----

----- 사용

-----,

-----.

다만, -----

----- 예금 중도해지----

-----.

④ -----

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
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
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
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
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
함한다)로 한다.

1. ~ 4. (생 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같으며, 이 -----

-----.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3절 신탁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청사 정비계
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
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
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
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
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
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우선순
위 - - - - - 붕괴

-----.

제45조(청사의 부지) -----

-----.
-----, -----
----- 고려-----
「건축법」에 따른 -----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각호-----
-----.

1. ----- 증감
등

규모로 설계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청사주변에 <u>공원화된</u> 녹지조 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7. ----- <u>공원화</u> 된 - - - - -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인천광역시 건축 조례』</u> 의 <u>규정에 의하여</u>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u>「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u> <u>조에 따른</u> ----- -----.
제49조(정의) 이 <u>조례에서 “관사”</u> <u>라 함은</u> 구청장, 부구청장, 시 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 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 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 -- <u>장에서 “관사”</u> <u>란</u> -----, -----, - - - - -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급 관사 : 부구청장 <u>관사</u> <u>및 이에 준하는 관사</u>	2. ----- : ----- <u>및 이에</u> <u>준하는 공무원</u> ----
3. 3급 관사 : <u>시설관리사·기타</u> <u>관사 등</u>	3. ----- : <u>시설관리사 등</u> <u>의 관사</u>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 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제52조(사용책임) -----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
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
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
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1. ~ 2. (생략)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라 사
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
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
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
친 때

4.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
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
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
해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
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세공과금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 2. (현행과 같음)

3. -----

게을리하여 -----

4.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

----- 해
당 -----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 제>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
내 분납

② (생략)

<신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
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
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
다.

가. ~ 나. (생 략)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
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
당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
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
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상금 지급) ① -----

보상-----
-----, -----
-----.

1. -----
사람에게-----

-----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제1호----- 그 밖의
----- 사람에게--

-----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사람에게-----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에게</u> 의뢰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u>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u>해당</u> ----- ----- . ----- <u>해당</u> ----- ----- ----- ----- <u>감정평가법인등에</u> ----- -----. 제67조(시행규칙) ----- <u>필요</u>-----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8.0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7.09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동춘동 81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101번길 44-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